

2003년도제2회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

2003. 10. 1.
자치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3년 9월 15일 이천시장 제출
- 나. 회 부 일 자 : 2003년 9월 19일
- 다. 상 정 일 자 : 제64회 이천시의회(임시회)
제1차(2003. 9. 29) 자치행정위원회 상정
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(제안설명자 : 자치행정국장 김종화)

가. 제안이유

- 전몰(전상)군·경을 비롯한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고자 이천시 보훈회관을 신축하여 이들에게 휴식처 및 재활 공간을 마련해 줌으로써 삶의 의욕을 고취하고,
- 이천시공설공원묘지(4개소)의 만장시기가 도래됨에 따라 늘어나는 묘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코자 시립 추모의 집을 신축 묘지수요 대체 충당 및 매장위주의 장묘문화에서 화장 납골중심으로 장례 문화로 전환하고,
- 농촌지역의 문화·체육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에서 농민문화·체육센터를 신축하여 농촌지역 주민의 체위향상 증진 및 문화·체육 시설을 확충코자 함.

나. 주요골자

가) 취득대상재산(건물 신축)

- 이천시 중리동 2-5번지의외 2개소 3동 3,318㎡(1,004평) 4,537백만원
 - 이천시 보훈회관 신축: 1동 331㎡(100평) 490백만원(시비)
 - 시립추모의 집 신축: 1동 1,021㎡(309평) 2,047백만원
(재원: 국비1,289백만원63%, 도비276백만원14%, 시비482백만원23%)
 - 농민 문화·체육센터 신축: 1동 1,966㎡(595평) 2,000백만원
(재원: 마사회보조금1,500백만원75%, 시비500백만원35%)

나) 처분대상재산: 없음

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이해수)

- 2003년도 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은 이천시 보훈회관 신축 및 시립 추모의 집 신축과 농민 문화 체육센터를 신축하고자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변경안으로서
- 이천시 보훈회관 신축 1동 331㎡는 국가유공자의 휴식처 및 재활 공간을 확보하여 삶의 의욕을 고취하고자 중리동 2-5번지 시유지에 신축하고, 시립 추모의집 신축 1,021㎡는 백사면 조읍리 시유지 공원묘지 내에 신축하며, 농민 문화·체육센터 신축 1,966㎡는 호법면 주박리 산6번지 시유지에 건립코자 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으로
-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, 최근 우리시의 공유재산 실태를 보면 각종 회관 센터 사무소등 각급 공공 및 사회단체에서 사용하게 되는 건축물을 건립하여 유지관리비를 지원하게 됨으로서 경상비지출이 매년 증가하는 실정으로 각종회관은 가능한 한 집단화하여 유지관리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론요지 : 생 략

6. 심사결과 : 수정가결

가. 이천시 보훈회관 신축 : 부 결

나. 시립추모의 집 신축 : 원안가결(조건부 가결)

※ 일방적인 사업추진이 아닌 관련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 등을 사전 협의 등을 통해 원활히 해결해 줄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의결함.

다. 농민 문화·체육센터 신축 : 부 결

7. 기타사항 : 없 음